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및 입소기간 연장 〉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927호)

2025.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및 입소기간 연장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8.
3. 회 부 일 : 2025. 6.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 18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입소 시설의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가 달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및 입소기간 연장

개정안은 청소년쉼터(일시쉼터는 제외함. 이하 같음)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 초과 시 퇴소하도록 하되, 학교 재학 및 직업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2조의2(청소년쉼터 등의 퇴소조치 등)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시켜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u>

	<u>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청소년의 입소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u>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만,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입소 중인 청소년을 계속하여 보호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u>제32조의2</u>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 (생략)	<u>제32조의3</u>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
<u>제32조의3</u> (자립지원) (생략)	<u>제32조의4</u> (자립지원) (현행 제32조의3과 같음)

현행 법령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¹⁾의 입소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소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음²⁾.

현행법은 청소년³⁾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5세가 되면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쉼터⁴⁾는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으며, 보호기간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은 일시쉼터는 7일 이내,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최장 24개월),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1년 연장 가능, 최장 4년)로 하고, 중장기쉼터의 경우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에서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고 함.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보호기간>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최장 24개월)	3년 이내 (최장 4년)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 주거 지원 및 사례 관리 중심의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기본 1년(6개월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최대 2년)임.

현행법⁵⁾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는 퇴소 후 주거, 생활, 취업 등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립 기

4) 2025년 기준 137개소(일시 33개소, 단기 66개소, 중장기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이 마련되지 않은 퇴소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직면할 수 있음.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추진 현황 >

세부 분야	주요 내용
자립지원수당	○ 시설 퇴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 단가* 인상 * 지원단가: ('21) 월 30만원→ ('23) 월 40만원→ ('25) 월 5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취약계층*에 가정 밖 청소년 포함('25.1월) * 훈련비 총 500만원 지원(일반300+추가200) 및 자부담률 완화(15~55%→0~20%)
기초생활보장	○ 생활안정 및 실질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소득, 재산 공제율 적용('25.1월) * 소득인정액 산출 시 자립지원수당 100% 공제, 금융재산 산정 시 자립정착금 100% 공제, 근로소득 60만원 공제 및 나머지금액 30% 추가공제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전세·매입·건설) 신청자격*이 있는 시설 퇴소 청소년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신청 접수 후 지원 * (전세·매입)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 이고, 시설 이용기간이 2년 이상 (건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

자료 : 여성가족부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 초과 시 퇴소하도록 하되, 학교 재학, 직업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유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질병 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

립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청소년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동복지법」⁶⁾도 보호대상 아동이 18세 이상이거나, 보호 목적 달성시 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학교 재학, 직업 훈련, 질병, 취업 준비 등⁷⁾ 필요시에는 25세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만을 퇴소조치 및 입소기간 연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쉼터 등의 입소기간이 만료된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퇴소조치 및 연장가능 여부 등이 명

6)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학교 재학은 대학기간 전체, 직업 훈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질병·장애 등 그 외의 사유는 26세 미만까지 지원.

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입소기간이 만료된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입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현행법 제32조의2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의 사유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퇴소금지를 규정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제32조의2제1항제1호)나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제32조의2제1항제2호)에는 퇴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퇴소조치를 규정할 경우에는 체계상 퇴소사유에 청소년의 연령뿐만 아니라 제32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현행법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같이 퇴소조치를 규정할 경우 가정폭력 등으로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현행법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제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과 입소기간 연장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⁸⁾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24세 초과시에도 학업·직업훈련 등의 사유가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자립 기반이 미흡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나, 개정안 제1항의 퇴소 강행 규정은 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애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⁹⁾에서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
-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 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입소 기간 연장 기간, 절차와 방법 등을 부
령으로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임.

한국청소년복지시설협회는 청소년쉼터는 일정 기간의 보호 중심 시
설로써, 입소 청소년은 일정한 보호 기간 이후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으로의 연계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자를 중심
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참고자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개요

□ 청소년쉼터

- (목적)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통해 비행·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제41조
- (추진경과) 청소년쉼터 최초 운영 지원(서울YMCA, '92.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복지시설 종류 및 설치근거 마련('12.2.1)
- (주요내용)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일시보호, 생활지원(의·식·주), 상담·교육, 문화활동, 자립준비 및 주거 등 지원
-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최장 24개월)	3년 이내(최장 4년)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회 복 귀를 위한 자립지원

- (운영현황) 2025년 기준 137개소(일시 33, 단기 66, 중장기 38)

□ 청소년자립지원관

- (목적) 청소년쉼터, 회복지원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중심의 자립 지원
- (대상) 시설 퇴소 후에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 (운영방식) 주거지원 형태에 따라 구분
 - 이용형 : [주거연계] +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용청소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정책 연계를 통해 주거 지원)
 - 혼합형 : [주거연계 + 생활관운영] + 자립지원 프로그램
(주거지원정책 연계 및 생활관 직접 운영)
- (운영현황) 13개소 (이용형 7개소, 혼합형 6개소)

(단위: 개소, '25.8월 기준)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
시설 수	13	2	1	1	2	1	3	1	1	1